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 서식 수정(안 별지 서식 제64호 개정)

1)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중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신설로 감면비용 신청기한을 매년 3월 31일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3항에 신청기한을 별도 표기하고 있지 않아 신청기한 도과 등의 우려가 있음.

2) 따라서, 문화재관람료 감면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(별지 서식 제64호)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상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.

나.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서류간소화 도입(안 제52조의2, 안 별지 서식 제85호의2 개정)

현행법상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 첨부서류인 ‘사업자등록증’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, 이를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고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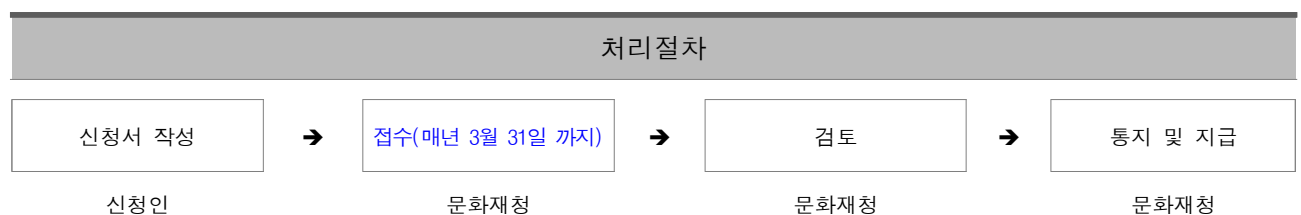
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해야 한다”를 “제출해야 하며,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(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)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별지 제64호서식 뒤쪽 중 “접수”를 “접수(매년 3월 31일까지)”로 한다.



별지 제8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0일
허가 사항	허가번호	허가 연월일	
대 표 자	성 명	생년월일	
	주 소 (전화번호:)		
상 호	현재 허가받은 상호		
영 업 장 주 소 지	현재 허가받은 영업장 주소지 (전화번호:)		
변경사유			
변경사항	변경하고자 하는 상호		
	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장 주소지 (전화번호:)		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75조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재매매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 서류	상호·영업장주소지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명(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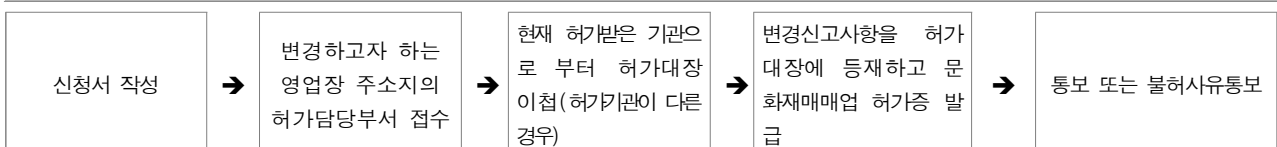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

신청인

처 리 기 관 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의2(문화재매매업의 변경 신고)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52조의2(문화재매매업의 변경 신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제출해야 하며,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(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